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7회 임시회(2024. 4.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4-48
----------	-------

2024. 4. 15.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건강동행과)
- 나. 제 출 일 : 2024. 4. 2.
- 다. 회 부 일 : 2024. 4. 3.

2. 제출이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모자보건법」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4. 2. 29 ~ 2024. 3. 20. (의견 없음)
- 2)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폐지조례안의 개요

-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라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그동안 구 차원에서 자치사무로 시행하던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정책’과 중복되어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산모 건강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마다 상이하게 지급되는 산후조리 경비사업¹⁾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산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폐지하는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²⁾」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신설 및 중복지원은 어려워 마포구만의 복지정책 사업이 폐지되는 점은 아쉬우나, 그동안의 출산 관련 정책이 대부분 출생아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 비해 출산 여성의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가지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 광역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짐.
- 다만, 조례가 제정과 폐지를 자주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혼란이 야기

1) “산후조리원 특실 2주에 3800만원”...줄줄이 폐업하는데 비용은 27% 올라 (서울신문, 2023.3.1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될 수 있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되며 입법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정책을 기획할 때에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 조례 제정의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음.

- 아울러 구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구 정책사업의 종료 공지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사업’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음.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박 철 호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① 시장은 결혼·임신·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
2.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② 시장은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자동결 시술 비용
2. 정·난관 복원 시술비

③ 시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8>